

의안번호	2210736
의 퇴 인	민병덕의원
회 답 일	2025.7.8.
추 계 번호	25D3049

디지털자산기본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제정안에 따른 디지털자산위원회의 회의참석수당,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 조사의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2억 5,500만원, 2030년 2억 1,5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11억 5,500만원(연평균 2억 3,1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회의참석수당(안 제16조)	15	15	15	15	15	75	15
기본계획 수립(안 제17조)	40	—	—	40	—	80	16
실태조사(안 제18조)	200	200	200	200	200	1,000	200
합계	255	215	215	255	215	1,155	23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5조 (디지털자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디지털자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의결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디지털자산위원회를 둔	의무규정
	안 제16조 (디지털자산 위원회의 조직)	디지털자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제3항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대통령이 임명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됨.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함 1. 금융위원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공무원 3. 제122조에 따른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의 장 4.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지명하는 사람 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가. 디지털자산 관련 산업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다. 소비자 및 이용자보호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라.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7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디지털자산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마. 판사·검사·변호사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의무규정
		디지털자산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음	재량규정

2	안 제17조(디지털자산 기본계획 수립 등)	디지털자산위원회는 이용자 보호 및 디지털자산산업의 진흥을 위해 디지털자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함	의무규정
		기본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하되, 디지털자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함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1. 디지털자산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의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디지털자산산업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시설투자 등 인적·물적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디지털자산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및 연구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추진에 관한 사항 4. 디지털자산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 및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정책 및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6. 디지털자산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디지털자산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디지털자산위원회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의무규정
3	안 제18조(디지털자산 실태조사)	디지털자산위원회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디지털자산시장 및 디지털자산업자의 영업활동 실태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함 1. 디지털자산 발행 및 유통 현황 2. 디지털자산업자의 영업활동 3.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의 환불준비금 현황 4. 디지털자산산업의 경쟁도 평가 5.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디지털자산시장 활성화 및 디지털자산산업 육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7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15조(디지털자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0	
	안 제16조(디지털자산위원회의 조직)		
2	안 제17조(디지털자산 기본계획 수립 등)	0	
3	안 제18조(디지털자산 실태조사)	0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본 추계에서 추가재정소요는 디지털자산위원회 민간위원수당(안 제15조 및 제16조), 디지털자산 기본계획 수립(안 제17조), 실태조사(안 제18조)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산하여 추계함
- 디지털자산위원회의 설치·운영 비용은 소속 위원에게 지급하는 회의참석수당을 추계하며, 그 밖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함
 - 안 제16조¹⁾는 디지털자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3분의 2이상이 되도록 함
 - 디지털자산위원회의 민간위원 수는 20명으로 하고, 회의는 연 6회로 하며, 회의참석수당 단가는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²⁾을 참고하여 25만원으로 가정함
 -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 정부위원회 현황(<https://www.fsc.go.kr/po020401>)에 따르면, 2024년 11월 6일에 최초로 구성된 가상자산위원회의 회의실적이 2024년 4분기 1회, 2025년 1분기 2회임
 - － 본 추계에서 가상자산위원회의 회의실적(반기 3회)을 참고하여, 제정안에 따른 디지털자산위원회의 회의가 연간 6회씩 개최되는 것으로 가정함
 - 다만, 디지털자산위원회 산하의 전문위원회는 현시점에서 그 설치 여부, 구성

1) 제16조(디지털자산위원회의 조직) ① 디지털자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디지털자산위원회 위원장은 제3항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디지털자산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3분의 2이상이 되어야 한다.

1. 금융위원장 및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공무원

3. 제122조에 따른 한국디지털자산산업협회의 장

4.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지명하는 사람

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가. 디지털자산 관련 산업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다. 소비자 및 이용자보호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라.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7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디지털 자산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마. 판사·검사·변호사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기획재정부)

·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150,000원 내,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000원 내로 편성

· 원격지에서 위원회 참석시 소요되는 경비, 단순한 회의 참석 이외의 사전자료수집, 회의안전 검토 등 별도의 용역제공에 대한 전문가 자문료,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은 별도 편성

인원 및 방식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므로, 추계의 대상에서 제외함

- 디지털자산 기본계획 수립비용은 기본계획의 수립 주체가 디지털자산위원회
이므로 기본계획 수립 자체에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되, 그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에 용역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함
 - 디지털자산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용역비는 금융위원회가 2022년
실시한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 수립 선행연구’ 용역 사례를 참고함

[표 2] 중앙부처 차원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현황

구분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 수립 선행연구	제4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기초연구	데이터 경제 기반 정책 연구
목적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2023~2025) 수립에 필요한 선행연구 추진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환경 분석 및 향후 정책 방향 결정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 한 물리적·제도적 기반 조성에 필요한 제언
발주기관	금융위원회	고용노동부	4차산업혁명위원회
연구기관	한국금융연구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정보화진흥원
연구기간	‘22.10.~’23.3.	‘22.2.~’22.11.	‘18.10.~’18.12.
연구용역비 (예산 기준)	40,000,000원	47,000,000원	30,000,000원

자료: 행정안전부의 정책연구관리(<https://www.prism.go.kr>)에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
정책처 제작성

- 디지털자산 실태조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추진을 위한 유사 실태
조사 단가를 참고하여 추계함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8조³⁾는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국회에 제출하는 지능정보화 추진 시책과 동향에 관한
보고서에 실태조사를 포함하도록 규정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2025년 AI산업육성(2602-301)의 내역사업으로 “인공
지능 산업 실태조사”에 2억원이 편성됨
- 다만, 한국디지털자산산업협회(안 제122조)와 협회에 설치되는 거래지원적격성

3)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8조(실태조사, 통계 및 지표의 작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계청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 및
인공지능등 관련 시책과 사업의 기획·수립·추진을 위하여 국내외 인공지능등에 관한 실태조사, 통계 및
지표를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통계와 연계하여 작성·관리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 및 지표의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통계 및 지표의 작성·관리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평가위원회(안 제130조), 시장감시위원회(안 제132조)는 다음과 같이 민간재원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추계의 대상에서 제외함

-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 회원사의 자율규제기관으로, 회원인 디지털자산사업자의 회비⁴⁾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됨. 설립 비용 또한 협회에서 부담함⁵⁾
- 거래지원적격성평가위원회 및 시장감시위원회: 거래지원적격성평가와 불공정거래행위 감시 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수취⁶⁾할 수 있음

□ 제정안은 부칙에서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디지털자산위원회의 회의참석수당(안 제15조 및 제16조)

- 회의참석수당은 디지털자산위원회의 민간위원 인원에 회의횟수와 회의참석수당을 각각 곱하여 추계함
 - 제정안은 디지털자산위원회를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3분의 2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민간위원은 20명으로 가정함
 - 제정안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폐지⁷⁾를 전제로 하고 있고, 같은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가상자산위원회의 민간위원이 10명이므로, 본 추계에서 제정안에 따라 회의참석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민간위원을 10명으로 가정함
 - 회의참석수당은 1인 1회당 25만원 지급하고, 회의는 연 6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함
- (추계결과) 추계기간 동안 디지털자산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수당의 추가재정소요는 다음 표와 같이 추정됨

4) 제124조(회원 가입 등) ① 디지털자산업자는 협회에 가입하여야 하며, 디지털자산 관련 업무를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협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② 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5) 부칙 제3조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 설립에 관한 사항) ① 금융위원회는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기 위하여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협회의 설립비용은 협회가 부담한다.

6) 제124조(회원 가입 등) ③ 협회는 제12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수취할 수 있다.

7) 부칙 제5조(법률의 폐지) 이 법의 시행과 동시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폐지한다.

[표 3] 디지털자산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의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회의 참석 수당	지급인원(A, 명)	10	10	10	10	10	-
	지급단가(B, 천원)	250	250	250	250	250	-
	회의일수(C, 일)	6	6	6	6	6	-
	소 계 (D=A×B×C, 백만원)	15	15	15	15	15	7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디지털자산 기본계획 수립(안 제17조)

- 디지털자산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용역비는 금융위원회가 2022년 실시한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 수립 선행연구’ 용역 사례를 참고함

- 제정안에 따른 디지털자산 기본계획은 3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함
-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 수립 선행연구 용역비: 40백만원

- (추계결과) 추계기간 동안 디지털자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의 추가재정소요는 다음 표와 같이 추정됨

[표 4] 디지털자산 기본계획 수립 기초연구의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기본계획 수립(기초연구)	40	-	-	40	-	8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디지털자산 실태조사(안 제18조)

- 디지털자산 실태조사의 추가재정소요는 과학기술정부통신부가 매년 실시하는 실태조사의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함

- 제정안은 디지털자산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에는 영업활동 실태 외에도 산업 경쟁도 평가, 산업육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됨⁸⁾

8) 제18조(디지털자산 실태조사) ① 디지털자산위원회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디지털자산시장 및 디지털자산업자의 영업활동 실태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1. 디지털자산 발행 및 유통 현황
2. 디지털자산업자의 영업활동

- 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로서 유사성을 가진 조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인공지능 산업 실태조사”가 있는데, 동 사업의 2025년 기준 예산은 2억원임
- (추계결과) 추계기간 동안 디지털자산 실태조사의 추가재정소요는 다음 표와 같이 추정됨

[표 5] 디지털자산 실태조사의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실태조사	200	200	200	200	200	1,00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라. 추계결과

- 제정안에 따른 디지털자산위원회의 회의참석수당,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의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2억 5,500만원, 2030년 2억 1,5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11억 5,500만원(연평균 2억 3,100만원)으로 추계됨

[표 6]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회의참석수당(안 제16조)	15	15	15	15	15	75	15
기본계획 수립(안 제17조)	40	—	—	40	—	80	16
실태조사(안 제18조)	200	200	200	200	200	1,000	200
합계	255	215	215	255	215	1,155	23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유사사업을 참고하여 추계한 것이며, 실제 제정안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추가재정소요는 추계 결과와 달라질 수 있음

-
3.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의 환불준비금 현황
 4. 디지털자산산업의 경쟁도 평가
 5.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디지털자산시장 활성화 및 디지털자산산업 육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장삼열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삼열	02-6788-4831	jsy@na.go.kr